

투자일임계약서

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에스에스자산운용(주)** (이하 "회사"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해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투자일임자산 및 투자대상)

- ① 투자일임자산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재산 및 해당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을 제공함에 있어 투자일임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상품)으로 운용합니다.

제3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

고객은 투자일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회사에게 일임 및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 ① 투자일임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② 투자일임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③ 유가증권 등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 ④ 유가증권 등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 ⑤ 유가증권 등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 ⑥ 기타 제1항 내지 제5항과 관련된 부수업무
- ⑦ 제 1항 내지 제 5항 사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운용에 개입하기 위하여 「위탁투자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 의 위탁투자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에 의해 분류된 투자자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투자지 침이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합니다.

- ①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자산의 운용
- ②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 ③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전략에 대한 보고
- ④ 기타 투자일임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투자일임서비스 업무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합니다.

- ① 회사소개서, 운용계획서 등 프레젠테이션 실시 (필요시)
- ② 계약 사전서면자료의 전달

- ③ 고객의 투자목적 등 파악과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 ④ 증권사에 고객 명의의 계좌개설 (카드 및 인감은 고객이 보관)
- ⑤ 기본수수료의 수취
- ⑥ 분기별 투자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 ⑦ 계약기간 종료 시 투자실적의 최종평가 및 성과수수료의 수취

제6조 (회사의 신의성실 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내용과 관리현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습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 운용계좌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일체의 자료를 영업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통지의무)

-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제1항의 변경내용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에 통지하지 않거나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1」 "세부 계약조건"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또는 전화로 합니다.

제9조 (운용계획서 및 투자결과 등의 통지)

- ① 계약기간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제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단,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투자일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 2.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매매회전율, 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등 운용현황
 - 3.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기준 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등
 - 7. 투자일임자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시기, 실적, 잔액)
 - 8.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 (업무의 위탁)

-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수탁회사와의 투자권유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본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수탁한 회사에게 지불 가능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단, 투자 일임자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자산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함), 운용업무와 관련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임자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계약자산 운용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마다 1회 이상 고객의 재산상황(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 전에 투자일임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⑤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투자일임담당자의 선임 및 변경)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운용인력 중에서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할 담당자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운용인력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이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투자운용인력의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투자운용인력이 사망, 퇴직 등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⑦ 고객이 제6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⑧ 고객이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금지사항)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일임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① 고객에게 현금 또는 투자일임자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현금 또는 투자일임자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제외
- ②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일임자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③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⑤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임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임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가능
- ⑥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자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는 가능
- ⑦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⑧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자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⑨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가능
- ⑩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⑪ 투자일임자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않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일임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자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가능
- ⑫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 ⑬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⑭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 ⑮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 ⑯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대한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4조 (회사가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①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는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②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③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공개매수의 응모, 유상증자 청약,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은 제외함
- ④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금하는 것

제15조 (계약 기간)

-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회사와 고객이 정한 기간으로 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유효기간은 「별지 1」"세부 계약조건"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지시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위반내용이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에 연 1회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②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재산을 고객에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합니다. 단,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계약, 만료, 해지시의 재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산형태와 만료(해지 포함)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재산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증권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경우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합니다.

제18조 (투자일임자산의 평가)

제19조의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는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익영업일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① 『자본시장법』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의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
- ② 기타 투자일임자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함

제19조 (투자실적의 평가)

-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자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합니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20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 ②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

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합니다.

제20조 (투자일임수수료 및 지급시기)

① 본 계약은 수수료 구성 체계에 따라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가 같이 부과되는 기본형, 성과수수료만 부과하는 성과형으로 구분됩니다. 회사는 투자일임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류별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투자일임서비스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지1] 세부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기본수수료 :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 1」"세부 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매분기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2.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 초과분 혹은 수익에 대하여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성과보수는 시행령 99조의 2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가. 성과보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기준지표등)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 운용 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성과보수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라. 그 밖의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③ 고객은 제 1항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시기는 [별지1] 세부 계약조건에 따른 수수료 지급시기에 따릅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는 회사는 고객에게 14일 이내에 미납수수료에 대한 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은 14일 이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계좌에 추가 입금하여 수수료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시 [별지1] 세부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⑦ 고객의 요청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시 보유자산을 매도함에 따라 매매차익 또는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①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②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고객의 운용지시 포함)로 인한 손실

③ 관련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22조 (계약자산의 운용책임 및 손익의 귀속)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제23조 (자산의 소유권)

- ① 고객의 계좌 내 투자일임자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거나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위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2.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6.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위험 및 유의사항)

-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투자일임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그 어떠한 이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으며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되어 주가 상승 시 고수익이 실현될 수 있지만 주가하락 시에는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③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두거나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6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제27조 (분쟁의 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서로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고객]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회사]

상 호 : 에스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16층(센터빌딩)

사업자 등록번호 : 257-86-02345

대 표 이 사 : 정 윤 식 (인)

「별지 1」

세부계약조건

▶ **일임계약 상품명** : ☐ 공모주일임 ☐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일임(수요예측 참여형)

▶ **계약기간** : 20__년 __월 __일부터 20__년 __월 __일

▶ **계약자산** : 금 _____ 원정 (₩ _____)

▶ **계약자산 유지 조건** : 계약기간 중 일임계좌 계약자산 잔고를 최소 **1억 원** 이상 유지합니다.

▶ **거래증권사 및 계좌**

금융투자회사		계좌번호		계좌주	
--------	--	------	--	-----	--

▶ **고객에 대한 통지방법(E-mail 기재 필수)**

E-mail : _____ / 전화번호 : _____

▶ **계약유형** : 기본형(), 성과형()

▶ **투자일임 수수료**

1. 기본형

기본수수료 : 연간 1.0%(후납) / 성과수수료 : 고객과 별도 합의

2. 성과형

기본수수료 : 없음 / 성과수수료 : 고객과 별도 합의

주1: 기준수익률이란 계약시점의 평가금액 대비 평가기준일(정산일 전일)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환산 수익률
(평가금액은 채권의 경우 민간평가회사 2개 이상의 평가가격, 주식의 경우 종가를 기준으로함)

* 기본수수료는 일할계산함.

▶ **투자일임 수수료 지급시기**

기본수수료 : 계약시점으로부터 계약해지시까지 매 3개월마다 일할계산하여 후취로 고객 계좌에서 인출합니다. 고객계좌에서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직접 운용사 계좌로 입금합니다.

성과수수료 : 해지시점에 7일 이내에 고객 계좌에서 인출합니다. 해지 전이라도 일임 재산을 전액 현금화 후 출금을 원하는 경우 출금 시점에 성과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고객 계좌에서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직접 운용사 계좌로 입금합니다.

▶ **해지수수료** : 없음

▶ **투자일임담당자** : **팀단위 운용**

20 . . .

(고객) 성 명 : (서명/인) (회사) 상 호 : 에스에스자산운용(주) (서명/인)